

산림청 공고 제2018-52호

「해외농업 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용자집행계획 및 사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8일

산림청장

2018년도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용자 사업자 모집

1. 지원 계획

- 지원사업
 - 해외산림자원개발 :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에너지조림, 임산물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
- 지원대상자 : 해외농업 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의한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로 당해연도 사업 실시가 확정된 자
- 지원규모 : 160억원
- 지원조건 : 연리 1.5%
 - 용자 한도, 기간 등 지원조건은 사업별 용자조건 참조
- 용자대출업무 대행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 용자신청서 접수기관 : 한국임업진흥원

2. 사업 대상자

- 「해외농업 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이하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로 해외에서 당해년도 조림, 조림지 육림, 임산물 가공시설 또는 해외조림지 매수를 통한 사업실시가 확정된 자

3. 신청 자격 및 요건

-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조림, 육림, 임산물 가공시설 등 당해년도 사업실시가 확정된 자
 - 해외산림자원개발 진출국의 투자 승인 등이 완료되어 용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 당해년도 조림 면적이 100ha 이상이며, 향후 규모화가 가능한 사업자(조림실시 기간이 다음년도 3월까지 이어지는 경우 당 해년도 사업으로 인정)
- 「해외농업 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에 의한 국내 목재 수급 비상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사업자
- 목재 수출 여력이 있고 개발자원의 도입 잠재력이 크며, 수출이 가능하도록 제도·기반이 갖추어진 국가 진출사업자
- 타당한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담보 제공 능력 등 충분한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사업자
- 해외산림개발사업 경험 및 기반이 축적된 사업자
- 수급조절, 가격안정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가기관(정부사업 대행기관 포함)이 행하는 사업

4. 세부사업별 용자조건

○ 사업별 용자조건

| 사업명구분 | | 금리 | 지원율(%) | | 용자한도 | 용자기간(년) (거치/상환) | 비고 |
|------------------|------------------|------|--------|-----|-------------|--------------------|------|
| | | | 용자 | 자부담 | | | |
| 산업 및 탄소 배출권조림 | 속성수 (열대지역) | 1.5% | 100 | - | 소요액 | 7/3 | 육림포함 |
| | 속성수 (기타지역) | 1.5% | 100 | - | 소요액 | 10/3 | 육림포함 |
| | 장기수 (열대지역) | 1.5% | 100 | - | 소요액 | 17/3 | 육림포함 |
| | 장기수 (기타지역) | 1.5% | 100 | - | 소요액 | 25/3 | 육림포함 |
| | 고무나무 | 1.5% | 70 | 30 | 사업비의 70% 이내 | 7/3 | 육림포함 |
| 바이오에너지 조림 | 팜유나무 | 1.5% | 60 | 40 | 사업비의 60% 이내 | 7/3 | 육림포함 |
| | 바이오매스 조림(SRC) | 1.5% | 100 | - | 소요액 | 2/3 | 육림포함 |
| 임산물가공시설 | | 1.5% | 70 | 30 | 사업비의 70% 이내 | 2/3 | - |
| 해외조림지 매수 | | 1.5% | 70 | 30 | 사업비의 70% 이내 | 10/3 | - |

주1) 육림사업 용자기간은 당초 용자 지원된 조림사업의 용자기간 이내로 적용

주2) 팜유나무 지원조건 : 바이오에너지용에 한하며, 해당 조림대상지의 산림전용 책임이 없음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 자료(위성영상 등) 제출

주3) 바이오매스조림(SRC) 거치기간은 수종별 벌기령(2 ~ 5년) 적용
SRC(Short Rotation Coppice) : 단벌기 맹아갱신

주4) 임산물가공시설 : 목재 또는 부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시설

주5) 해외조림지 매수 : 산업 탄소배출권 바이오매스 조림지 및 조림대상지, 국내기업이 확보한
조림지 공동투자 또는 지분의 일부 매입 포함

○ 사업별 세부 지원 내용

- 조림 : 조림예정지정리, 묘목구입(또는 양묘비용), 식재, 비료
구입 및 시비, 임도시설, 기계장비 비용 및 인건비,
당해년도 풀베기와 조림구획 측량 및 경영계획 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육림 : 보식, 풀베기, 가지치기, 간벌, 병해충 방제, 임도보수,
기계장비 비용 및 인건비, 경영계획 수립 등에 소요
되는 비용

- 임산물가공시설 : 부지조성, 임산물 가공 기계설비 구입·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 해외조림지 매수
 - ① 지원대상 : 산업·탄소배출권·바이오매스 조림지 및 조림 대상지를 매입하는 비용, 국내기업이 확보한 조림지 공동 투자 또는 지분의 일부를 매입하는 비용
 - ② 지원방법 : 계약서 및 법적 소유권 이전서류 등에 의한 매수비용 사후지원으로 대상국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유권 확인서 및 조림 관련 기관의 조림사업지 확인 증빙자료가 제출된 경우에 한함
- 담보물 취득 : 국내 담보물 취득으로 담보의 종류는 용자업무 대행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의 용자관련 세부규정에서 정함
 - 담보관련 문의 : 산림조합중앙회 상호금융여신부
 - 전화번호 : 02-3434-7236(정책자금팀)

5. 용자사업자 의무

- (개발자원의 반입) 산림사업종합자금을 지원받은 해외산림자원 개발사업자는 국내 목재자원의 수급 위기 시 산림청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지 수확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해야 함(해외농업 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
- (용자금 집행) 산림사업종합자금 용자지원 결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 대출을 신청하지 않거나 담보부적합으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50% 미만 대출도 포함) 익년도 상반기 용자 신청이 제한(2년 이내 2회 누적시 3년간 용자신청 제한)되며, 수령한 산림사업종합자금은 용자신청 당해년도 사업 계획에 따른 사업종료일 전까지 용자금의 해외 송금을 완료 해야 함. 단, 환율의 급등 등 사업비 집행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타당성 여부에 따라 해 외송금
기간의 연장이 가능함

- (실적제출) 산림사업종합자금을 지원받은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자는 6월 말 및 12월 말을 기준으로 사업실적과 융자금
집행상황(외환송금내역 및 세부사업별 집행내역 등)을 포함한
실적 보고서를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림청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자금지원 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당해연도 기추진된 사업실적 및
전(前)연도 사업계획을 초과하는 사업실적은 당해연도 사업실적으로
인정. 조림 실시 기간이 다음연도 3월까지 이어지는 경우 당해년도
사업으로 인정

6. 융자지원방법

- 사전대출
 - 사업비의 100% 사전대출 :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중 속성수와
장기수 사업, 바이오에너지 조림 중 바이오매스조림 (SRC조림)
 - 자부담 집행 후 잔액 사전대출 : 조림 중 고무나무 및 팜유
나무, 임산물가공시설
- 사후대출
 - 해외조림지 매수
 - * 자부담 집행 후 잔액 사전대출과 사후대출의 기 지출한 자부담액이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실적으로 인정

7. 융자 신청 접수기간 및 방법

- 융자신청 접수 기간 및 융자지원 사업비
 - 접수기간 : 2018. 3. 2.(금) ~ 2018. 3. 30.(금)
 - 지원계획 금액 : 160억원

- * 정부예산, 용자수요 등의 사정에 따라 지원액이 변경될 수 있음
- ** 용자심의회를 통한 지원액 결정 후 예산잔액 발생시 추가 모집 실시
- 용자 신청 제출자료
 -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용자(대출) 신청서(및 첨부서류)
- 신청서와 작성 요령 등은 별지 서식 및 산림청(<http://www.forest.go.kr>) 또는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정보서비스(<http://ofis.kofpi.or.kr>)를 참조
- 접수기관 및 문의처 : 한국임업진흥원 글로벌사업본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66길 58 세일빌딩 2층
한국임업진흥원 글로벌사업본부 해외산림협력실
(우편번호 07569)
 - 전화번호 : 02-6393-2703
- *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마지막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8. 용자대상자 결정 및 통보 등

- 용자대상자 결정은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용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제출된 신청 서류의 검토시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가 현지 확인 또는 사업계획 설명을 위한 면담을 실시할 수 있음
- 선정절차



- * 용자 심의는 1차는 서류·면담심사, 2차는 최종 심사로 진행
 - 1차 서류·면담 심사는 사업계획의 설명,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질 예정
- ** 지원액 결정 금액이 소액인 경우 기업의 수용 여부(용자신청 철회) 확인
- 용자 대상자 결정여부는 사업신청자별로 개별 통보(접수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 용자금 지급방법 : 담보(국내 물건에 한함) 취득 후 일괄 지급

9. 기타사항

- 공고 이외의 사항은 산림청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의 ‘여신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름
- 용자신청자는 용자심사와 관련한 자료 요청, 현지 확인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현지 확인 등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용자대상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신청사업 경합 시에는 ‘산림청 해외산림투자지원 자금 용자심 의회’에서 정한 사업종별 지원액 배분 기준 및 지원한도를 적용하여 신청사업자별 용자지원액이 조정될 수 있음
 - * (우선순위)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 바이오매스 조림 > 고무나무 조림 > 임산물가공시설 > 해외조림지 매수 > 팜유나무 조림
- 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자 증진을 위한 정부간 MOU가 체결되었거나, 체결을 공식적으로 협의 중인 국가에 대한 투자는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조림사업의 경우 개소별(지번 또는 사업계획서상 임·소반)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기 지원된 대상지에 대해서는 중복 신청 할 수 없음
 - 단, 지원 결정된 동일 조림사업장 내 추가 사업비 또는 지원 사업에 대한 부족액(인정가능 대상에 한함)에 대해 신청할 경우에는 사업구역 도면 등 추가소요액에 대한 명확한 근거 자료를 첨부할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용자사업에 대한 지원 결정액 조정으로 당해년도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수정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용자대상자 결정 후, 용자대상자의 담보제공 등 대출절차에 따라 용자금이 지원되므로 용자대상자 선정과 동시 용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님
- 용자목적 이외의 활용 용자금은 회수 조치되며, 해외자원개발 계획신고서의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외농업 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음
- 산림청은 정부간 합의에 의하여 투자대상 국가에 설치된 산림 협력센터로 하여금 용자사업에 따른 지도점검을 위임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 신용조사 등 사업신청에 필요한 경비는 신청자 부담임
- 제출서류는 한글파일로 작성하고 편철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 구비서류 중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접수를 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결과 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 붙임 1.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용자(대출)신청서 1부.
 2. 소요자금 산출내역서(작성양식) 1부.
 3. 용자 사업계획서(작성양식) 1부.
 4. 용자사업 신청 시 주의사항 1부. 끝.